

## 【 13 】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0. 7. 26

제출자 양주군수

### □ 개정이유

90개소의 우리 군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수질검사의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등으로 시설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제명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양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개정
- 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3조).
- 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 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함(안 제10조).
- 마.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 바.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4조).
- 사. 군수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양주군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 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을 말한다.
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 · 장기개발계획 및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 않아

**제6조(수질검사)** ① 군수는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①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가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폐지사유서 사본
2. 사용자대표협의회 동의서 사본(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3. 폐지 후 급수대책
4. 관리대장 사본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장 관리비용

**제13조(요금징수)** ① 군수는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하여야 하며, 양주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① 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 ① 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6조(설치)** 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① 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장 보 칙

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군수는 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①군수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 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간이급수시설관리대장(제4조제2항 관련)

관리번호		양주군 제 호							
구분	항 목	내 역							
일반 현황	위 치	경기도 양주군 읍·면 리 마을,부락							
	협의회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 )	-	-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투자 현황	총투자액	구 분	내 역 일 자	국 고 보 조	지 방 비	주민부담	기 타		
		자체지원	현금지원	시도비	시군비				
		최초사업비							
		시설개량							
		1차							
		2차							
		3차							
		수원이전							
		계							
		수원의종류	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폭유수 ⑤ 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타						
시설의유형	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양송식 ④ 기타								
시설 현황	정수시설	보유시설	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타	시설상태			특기사항		
		구 분	제 원	양호	불량				
		집수정 1				심도 : m			
		집수정 2				심도 : m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보유시설	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타	시설상태			특기사항		
		구 분	제 원	양호	불량				
		소독설비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송배수관로	구 분	송수관로			배수관로			관 종 별 총연장(m)	
		관 종	직 경	연 장	관 종	직 경	연 장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소 계		mm	M		mm		M
총 계		mm	M		mm	M	총계 : M		
급수 현황	계 획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현 재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	리터		
수질 검사	제한 금수	1차 :	2차 :	3차 :	계 :	일간			
	합격 여부					( 개항목 )			
개량 내역	개량 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 공 자	개 량 내 용				
수원 이전	이전 사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만원		
	이전 위치								

※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대장

(제7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양주군 제 호	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사 항
○ 취수원의 보호 · 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 · 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 · 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 · 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 · 관리상태			
오염물 제거	취수원부근		
	배수지부근		
기 타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 간이급수시설 수시점검 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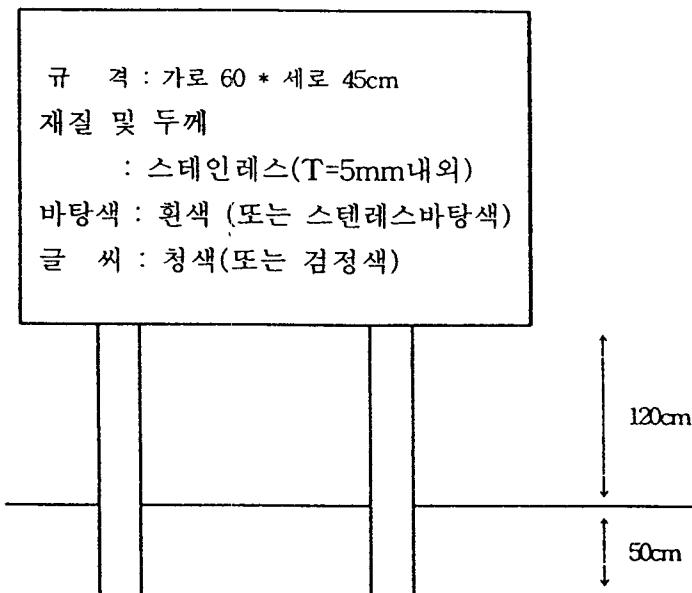
(제7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	시(군) 제 호	점검일자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조치 사 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 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 (공장폐수 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별표1]

## 간이급수시설안내판

(제5조1항 관련)



### ○ 내용문

알 림

1. 이곳은 수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또는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

위 치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양주군·상하수도사업소(전화: )

##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①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p> <p><u>&lt;신 설&gt;</u></p> <p>② “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군수를 말한다.</p>	<p><u>양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 ①과 같음)</li> <li>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li> <li>3.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이 경우 당해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li> </ol>

##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③ “사용자”라 함은 <u>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u> 말한다.</p> <p>④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u>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u>를 말한다.</p> <p>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관리자는 <u>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lt;신 설&gt;</p>	<p>4. “사용자”라 함은 <u>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u> 말한다.</p> <p>5. “사용자 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u>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u>를 말한다.</p> <p>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u>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u></p>
<p>제4조(간이상수도관리 기록·보존)</p> <p>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 일체를 관리한다.</p> <p>② 관리자는 <u>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u></p>	<p>제4조(시설의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u>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리한다.</u></p> <p>② 관리자는 <u>간이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u>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관리자는 <u>별표1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간이상 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u>          ②관리자는 <u>간이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u>&lt;신 설&gt;</u></p> <p>제5조(점검) ①관리자는 <u>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u>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전하여야 한다.</u></p>	<p>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u>간이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u>          ②관리자는 <u>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쪽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제6조(수질검사) ①군수는 <u>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u>          ②군수는 <u>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u></p> <p>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u>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u></p>

##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②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조(개선조치) 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유지, 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p>	<p>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10조(시설의 폐지) ① 관리자는 <u>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u>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p> <p>② 관리자가 <u>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u> 하는 경우에는 <u>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u>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간이급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u></p> <p>제11조(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수질 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u>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등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② 군수가 <u>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지사유서 사본</li> <li>2. 사용자 대표협의회 동의서 사본(제 1 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제외)</li> <li>3. 폐지후 급수대책</li> <li>4. 관리대장 사본</li> </ol>

##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제11조(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p>	<p>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20조 및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3조(요금징수) ①군수는 간이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양주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p>
<p><u>&lt;신 설&gt;</u></p>	<p>제14조(관리비용) ①군수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간이급수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계량기) 관리자는 <u>요금징수</u>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u>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u></p> <p>②<u>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 한다.</u></p>
<p>제13조(설치) 관리자는 <u>간이급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u></p>	<p>제16조(설치) <u>간이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제14조(구성) &lt;신 설&gt;</p> <p>①협의회의 대표자는 <u>간이급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과반수이상 출석하여 사용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u></p> <p>②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p> <p>③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u>간이급수 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u></p> <p>②협의회의 대표자는 <u>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현행②와 같음)</p> <p>④<u>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p>

##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p> <p>① <u>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u>  <u>&lt;신 설&gt;</u></p> <p>② <u>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u></p> <p>③ <u>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u></p> <p>④ <u>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u></p>	<p>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간이급수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u></li> <li>2. <u>간이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의결</u></li> <li>3. <u>~5. (현행②~④과 같음)</u></li> </ol>
<p>제16조(개최)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u>&lt;신 설&gt;</u></li> <li>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u>관리자에게</u>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p> <p><u>&lt;신 설&gt;</u></p>	<p>제19조(개최)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u></li> <li>3. (현행 2와 같음)</li> </ol> <p>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u>군수에게</u>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0조(실비보상) 군수는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u>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u> 할 수 있다.</p>

##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21조(교육) 군수는 <u>간이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u></p>
제6조(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u>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u>	<p>제22조(관리의 위탁) ①군수는 <u>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u></p> <p>②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 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u>규칙으로 정한다.</u></p>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규칙으로 정한다.</u>	<삭제>

##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水道法

는 경우 그 事業計劃에 第1項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94·8·3>

③一般水道事業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認·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法律에 의하여 부과되는 手數料 또는 使用料등은 이를 免除한다. 다만, 農地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造成費와 草地法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代替草地造成費를 제외한다. <改正 97·8·28>

第32條 (簡易上水道)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簡易上水道의 衛生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技術 및 財政支援을 하여야 한다.

②簡易上水道의 관리등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第3章 工業用水道事業

第33條 (國家등이 設置하는 工業用水道) ①國家는 產業立地및開發에 관한法律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產業園地에 대하여 工業用水道施設을 設置하여 工業用水를 供給하거나 다른 水道事業者로 하여금 工業用水道施設을 設置하여 工業用水를 供給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7·8·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用水의 料金·給水 기타 供給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인 水道事業者가 設置하여 供給하는 工業用水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改正 97·8·28>

第33條의2 (工業用水道事業의 認可) 工業用水道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認可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8>

(本條新設 93·12·27)

第34條 (準用規定) 第12條第3項, 第13條, 第14條, 第16條, 第17條 및 第23條 내지 第31條의 規定은 工業用水道 및 工業用水道事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3·12·27, 97·8·28>

## 第4章 專用水道

第35條 (國家가 設置하는 專用水道) 國家가 設置하는 專用水道에 관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36條 (專用上水道認可) ①專用上水道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12·27, 97·8·28>

##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3章 都市 水道法

②削除 <97·8·28>

第37條 (專用上水道에 관한 準用規定) 第15條, 第17條第2項, 第18條, 第19條第1項・第3項, 第20條 내지 第22條 및 第45條의 規定은 專用上水道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38條 (專用工業用水道에 관한 準用規定) 第17條第2項, 第36條 및 第45條의 規定은 專用工業用水道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8>

第38條의2 (小規模給水施設) ①市長・郡守는 小規模給水施設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水質検査를 하여야 한다.

②小規模給水施設의 개량・관리등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小規模給水施設의 設置 및 衛生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7·8·28)

## 第5章 韓國水道協會

第39條 (韓國水道協會의 設立) ①水道事業者, 水道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者, 水道와 관련된 學術・研究分野에 종사하는 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水道에 관한 調査研究・技術開發 기타 水道의 전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韓國水道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그 主된 事業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는 水道事業者等 會員이 납부하는 會費와 事業收入金등으로 충당하며, 國家는 經費의 일부를 豊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7·8·28>

第40條 (任員 및 選出方法등) ①協會에는 任員으로서 會長을 포함한 理事와 監事を 둔다.

②削除 <99·2·8 法5875>

③協會의 業務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協會의 任員의 定員・任期 및 選出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3·12·27)

第41條 削除 <99·2·8 法5875>

第42條 (監督) 環境部長官은 協會에 대하여 水道에 관한 調査・研究를 하게 하거

(추 105)

##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1996. 4. 1]  
[조례 제1563호]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 ②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군수를 말한다.
- ③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 ④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 3 조(정비계획의 수립)**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 2 장 간이상수도 관리

**제 4 조(간이상수도 관리·기록·보존)**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보수·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조(점검)** ①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조(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 7 조(보호시설의 설치)** ①관리자는 별표 1에 의하여 이 지역이 간이상수

(추 2)

## 제17편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 주위에 올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유지, 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과 누수발생 지역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 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② 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요금 징수

**제11조(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주군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계량기)** 관리자는 요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 4 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13조(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과반수

## 제17편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이상 출석하여 사용자들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협의회는 대표 1명, 위원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대표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⑤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①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②시설물의 운전과 소독실시

③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④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⑤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 5 장 보 칙

제17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1996. 4. 1 조례 제15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추 2)

## 제17편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간이 상수도관리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양식(제4조 제2항 관련)

관리번호	양주군 제 호								
구 분	항 목	내 역							
일반현황	위 치	양주군 면 리 마을							
	관리위원장	성 명	전화번호(TEL)						
	준공년월일	년 월 일	최초사업자						
투자현황	총투자액 (만원)	구 분	내 역	일 자	국 고 보 조	지 방 비	주민부담	기 타	
					자체지원	현금지원			도 비
		최초사업비							
		설	1 차						
		개	2 차						
		량	3 차						
		수 원 이 전							
		계							
		수원의종류	①지하수 ②제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수 ⑦기타						
		시설의유형	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시설현황	보유시설	구 분	제 원	시설상태		특 기 사 항			
				양호	불량				
		취수시설	집 수 정1				심도	III	
			집 수 정2				심도	III	
			양수모터1					마력	
			양수모터2					마력	
		보유시설	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지 ④배수지 ⑤기타						
		정수시설	구 분	제 원	시설상태		특 기 사 항		
					양호	불량			
			소독설비						
	침 전 지								
	여 과 지								
	배 수 지								
송배수관로	구 분	송 수 관 로	배 수 관 로	관 종 별					
		관 종	직 경	연 장	관 종	직 경	연 장	총 연 장 (M)	
		소 계		M			M		
		소 계		M			M		
		소 계		M			M		
	총 계		M		M		M		
급수현황	계 획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리터		
	현 재	급수인구 :	명	급수가구 :		가구	1인당1일급수량: 리터		
	재 한급수	1차 :	-	2차 :	-	3차 :	-	계 : 일간	
수질검사	검사시설	취 수 원	배 수 지	수 도 전	검사기관	( 개 항목)			
	합격여부				검사일시				
개량내역	개량일자	개량시설명	소요액(만원)	시 공 자	개 량 내 용				
수원이전	이전사유		이전일자		소요비용	단원			
	이전위치								

시설 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 간이상수도 정기점검일지 양식

(제5조 제1항 관련)

관리 번호	양주군 제 호		점검일자 :	
조사 및 확인항목	점 사 월		특기사항 및 조치결과	
	월	일	특기사항	조치결과
시설의 청소	소독기			
	취수원			
	배수지			
	침전지			
	여과지			
	관로파손			
오염원 제거	취수원부근			
	배수지부근			
				담당자

주 : 수질검사 결과사본을 첨부할 것.

단, 수질검사는 매 3개월마다 실시

제17편 사업소 제2장 상하수도사업소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별지 제3호 서식]

## 간이상수도 수시점검대장 양식

(제5조 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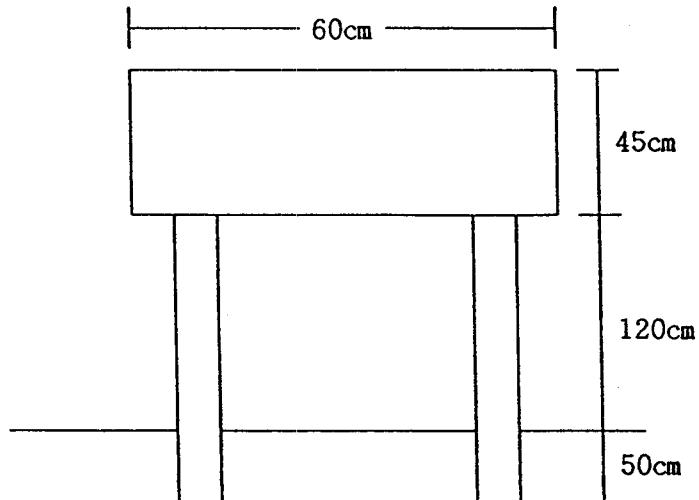
관리번호	양주군 제 호	점검일자 : 199 년 월 일		
점 검 항 목	점검내용	점 검 자	확 인 자	
1. 소독시설 유무				
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여부				
6. 외관(냄새, 색, 탁도)은 양호한가?				
7. 기타 조치사항				

(추 2)

## 〔별표 제1〕

## 간이상수도 안내판 (제7조 1항 관련)

간이상수도 안내판



재질 및 두께 : 10mm내외의 합판

바탕색 : 흰색

글씨 : 청색

## 내용문

## 알 릴

1. 이곳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상수도 취수 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위치 :

○ 시설용량 :

\* 수질오염 및 시설이상 발견시 연락처 : 양주군 도시과

(TEL : 43-0176, 49-1521)

## 양 주 군 보

제 192 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양주군 공고 제 2000 - 279 호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5월23일

양 주 군 수

1. 조례명 :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90개소의 우리군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수질검사의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 신설 등으로 시설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 5년마다 정비계획 수립

○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의무화

○ 간이급수시설 피해발생시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수립 및 사전대비

○ 지방상수도 공급 및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

○ 수도요금 징수처 않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시설의 사용자가 분담,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

○ 군수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위탁 가능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6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A4 용지를 셰워서 작성한 것)를 군수(참조: 상하수도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820-2441)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양주군간이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

### □ 개정구분 : 전문개정

### □ 개정이유

90개소의 우리 군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수질검사의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등으로 시설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제명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양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개정
- 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간이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3조).
- 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 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함(안 제10조).
- 마.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 바. 수도요금을 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4조).
- 사. 군수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 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별첨서 : 별첨

- 수도법 제32조제2항
- " 제38조의2 제2항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사전예고결과 : 2000. 5. 23 ~ 2000. 6. 5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음

□ 기타참고사항 : 별첨

- 현행조례
- 입법예고문